

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의 중도금 대출 신청이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되오니
중도금 대출을 희망하시는 계약자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중도금 대출 예약안내

구분	내용	비고
예약일정	2025년 10월 31일(금) ~ 2025년 11월 06일(목)	
예약방법	① 힐스테이트 공식 홈페이지 접속 (https://www.hillstate.co.kr) ② 계약·입주 메뉴 → 계약자방문예약 → 단지 선택 (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) ③ 동호수 선택 → 계약자 정보 입력 → 예약날짜 및 방문시간 선택	

■ 중도금 대출 일정안내

구분	내용	비고
신청일시	2025년 11월 7일(금) ~ 2025년 11월 8일(토) 10:00 ~ 16:00	
장소	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모델하우스 (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)	

■ 구비서류 및 기타 대출관련 문의사항 : 해당은행 중도금 대출 안내문 참조

■ 유의사항

- 대출신청은 반드시 본인 및 배우자가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,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하지 않거나, 본인 사정(신용, 자격 요건 등)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, 계약자가 직접 약정일에 중도금을 납입하여야 하며, 연체 시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.
- 대출한도는 분양가의 최대 60% 범위 내입니다.
-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및 신용 보증 수수료(HUG)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.

■ 보다 자세한 사항은 <은행 중도금 대출 안내문>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 중도금대출 안내

『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』 아파트 중도금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대출대상	■ 일반분양 수분양자 중 계약금 5% 이상을 납입한 자 ■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보증서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■ 농협 대출기준에 적합한 자				
대출한도	■ 분양대금의 60% 이내 (단,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범위 이내)				
대출금리	■ 실행금리: 대출실행일 확정 [월중신규COFIX (6개월 변동) + 1.15%] ■ 중도금대출 이자 후불제 사업장 -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이자는 시행사에서 대납합니다. 대납한 이자는 입주일 전에 시행사에 문의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.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이자는 농협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.				
대출만기	■ [2028년 6월 20일 또는 주택구입자금보증서 만료일 또는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래한 시점]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만기일시상환				
서류접수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접수일시</td><td>2025.11.07.(금) ~ 2025.11.08.(토) [10:00 ~ 16:00]</td></tr> <tr> <td>접수장소</td><td>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 모델하우스 2층 - 경기 평택시 합정동 835</td></tr> </table> 1)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접수시간을 사전예약 해주세요. 2)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고 공동명의인 경우 함께 방문 부탁드립니다.	접수일시	2025.11.07.(금) ~ 2025.11.08.(토) [10:00 ~ 16:00]	접수장소	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 모델하우스 2층 - 경기 평택시 합정동 835
접수일시	2025.11.07.(금) ~ 2025.11.08.(토) [10:00 ~ 16:00]				
접수장소	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 모델하우스 2층 - 경기 평택시 합정동 835				
고객부담 비용	■ 수입인지대금: 75,000원 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: 일시납(연환산 0.13%) (ex.대출금액 3억 원 기준 약 77만원) ※ HUG 보증료 할인대상은 10~60% 할인가능하니 꼭 확인해주세요.(후면 참조)				
부대비용	■ 주택도시보증공사 (HUG) 의 보증서 발급 시 지역농협 입출금통장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. ■ 농협은행계좌는 등록이 안되니 통장앞면에 '00농협' 인지 확인해주세요. ■ 계좌번호가 없을 시 '평택농협 동부지점' 방문하여 개설 또는 곡뱅크 어플로 개설해주세요. < 곡뱅크 계좌 개설방법 > 곡뱅킹 어플 설치 및 실행 ⇨ 금융상품몰 ⇨ 농축협 선택 ⇨ 예금 ⇨ 입출금 ⇨ MY곡통장 선택 ⇨ 비대면 계좌 개설 ⇨ 계좌번호 확인				

■ 대출 준비서류

- 해당 서류는 정부24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, 주소가 전부 기재되게 발급해주세요.
(단,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 가능)
- 공동명의인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준비해주세요.
(주민등록등본,초본,가족관계증명서가 중복되는 경우 1부만 챙기시면 됩니다.)

행정복지센터	세무서 민원실
-분양계약서에 맞게 준비 :인감날인 – 인감증명서(본인용) + 인감도장 :서명하신 경우 – 본인서명사실확인서 -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이력포함) -주민등록등본 (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각각 발급) -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(이력포함) (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각각 등본상의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초본이 필요) -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지방세납세증명서 (하단의 유효기간이 2025.11.20. 이후인지 확인) -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전국/2024년, 2025년)	-소득금액증명원 2023년, 2024년 (소득신고가 없다면 '사실증명원'으로 발급) -국세납세증명서 (하단의 유효기간이 2025.11.20. 이후인지 확인) -납부내역증명 2022년 11월 ~ 2025년 11월

■ 기타서류

- 분양계약서(원본)
-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- 직업관련서류 중 해당되시는 서류
: 근로소득자인 경우 재직증명서
(2025년 이후 재직하신 경우 최근3개월의 급여명세표(직인필) + 급여이체내역 추가)
: 사업자이신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
(2025년 이후 개업하신 경우 최근3개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)
: 프리랜서이신 경우 위촉증명서
: 연금소득자이신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(최근 1개년)

※ 외국인 서류는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.

주택도시
보증공사
(HUG)
보증료할인
제출서류

대상	자격요건	제출서류
저소득가구 (40% 할인)	○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연소득이 40백만 원 이하인 자	○ 본인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(2023 ~ 2024년) ※ 배우자 소득 없을 시: 사실증명원(세무서민원실)
다자녀가구 (40% 할인)	○ 세대원 중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	○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장애인가구 (40% 할인)	○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	○ 주민등록등본 ○ 장애인증명서
고령자가구 (40% 할인)	○ 보증신청인 및 배우자가 만65세 이상 (단, 보증신청인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60% 할인)	○ 주민등록등본
노인부양가구 (40% 할인)	○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(만65세 이상)을 1년 이상 동일한 세대하고 있는 가구	○ 주민등록등본
신혼부부 (40% 할인)	○ 보증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60백만 원 이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	○ 혼인관계증명서(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) ○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
한부모가족 (60% 할인)	○ 보증신청인이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	○ 한부모가족증명서
다문화가족 (40% 할인)	○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	○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) ○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국가유공자 (40% 할인)	○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	○ 각 대상자별 증서(유공자/대상자/유족증 사본) 또는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
의사상자 (40% 할인)	○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「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	○ 의사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○ 의상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상자 증서
모범납세자 (10% 할인)	○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써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	○ 모범납세자 증명서(우대기간 이내, 1개월 내 발급분) - 산업훈장, 산업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기획재정부장관표창, 국세청장표창에 한함

☞ 제출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1부로 같이 처리가능합니다.